#### ♥ ♥ 꿈과 사랑·슬기를 가꾸는 행복한 학교 ♥ ♥



# 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재안내

제 2024-192호

♣ 교무실 251-5811 ♣ 행정실 251-5809 ♣ FAX 251-5813 👚 http://www.cjsb.es.kr

- □ **지원대상**: 도내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
- \* 난치병: ① 암, 심·뇌혈관계 질환 및 1형 당뇨
  -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

### □ 지원우선순위

순위	구분	자격기준	세부기준
1	기초생활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권자 (생계, 주거,	① 계속적인
	수급자	의료, 교육) 가구의 학생	
	차상위계층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<sup>*</sup> 가구의 학생 *차상위계층: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	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험한 학생 - ② 의료비를
	한부모가족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	부담하기
	또는 조손가 <del>족</del>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	어려운 학생
2	기타	기타 저소득 가구	3 고학년 학생
3		1, 2순위 외	] ③ 고학단 학생

## □ 지원내용

구 분	내 용		
지원기간 지원금액	- 2023.7.1.부터 2024.8.31.까지 기간 내 지급한 치료비 - 1인당 500만원 이내 지원  ※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치병 중증도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 결정  ※ 2025년 지원기간은 2024.1.1.~2024.12.31. 예정		
지원범위	- 치료비 본인부담금의 90%		
제출기간	- 안내일 ~ 2024. 12. 9.(월)까지		
제출서류	①치료비 지원신청서 ②타기관 의료비 수령확인서 -타기관 지원금 받은 경우 증빙자료 포함 ③질환 설명서 ④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 ⑤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또는 질환 코드가 명시된 소견서		
제출처	학교		

## □ 유의사항

-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, 보건소, 개인보험(실비) 등에 우선적으로 신청하고, 그에 따른 차액분에 대해 지원(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 조치)
-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문예체건강과 부서자료실에 신청 서식 탑재

2024년 12월 4일

전 주 송 북 초 등 학 교 장